조선충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88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14일 수요일 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42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 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과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1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도자기(陶磁器)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 이 개정(改正)함.

품 목(品目)	발 역(發驛)	착 역(著驛)	급 종 별(扱種別) 임 률(賃率)
도자기(陶磁器)	부산(釜山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소화 물 급(小貨物扱) 2백1마일(哩·mile) 이상 3할(割) 7푼(分) 감(減) 2백51마일(哩·mile) 이상 4할(割) 감(減)
		단 동(安東)	차 급(車扱) 2할(割) 감(減)